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9. 6. 30.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12.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지급 신청 공고) 교학처장은 매 학기 장학금이 지급되기 전 반드시 장학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3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장학금

1. 중암장학금

가. 지급대상 및 기준 : 매 학년도 입학 전형 시 입학전체수석을 한 자에게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지급. 단, 재학 중 매 학기 직전(前)성적이 18학점 이상 취득을 하고 평균평점이 B(3.0) 이상 취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나. 지급액 : 등록금 전면(입학금 포함)

2. 대경특별장학금

가. 지급대상 및 기준 :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입학전체차석(2등)자에게 2학기(1년간) 지급. 단, 재학 중 매 학기 직전성적이 18학점이상 취득을 하고 평균평점 B(3.0)이상 취득을 하여야 한다.

나. 지급액 : 등록금 전면(입학금 포함)

3. 성적우수장학금 : 매 학기 직전학기 성적이 취득학점 18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B(3.0) 이상 취득을 하여야 한다. 단, 학과 전체 신청학점이 18학점이하일 경우 평균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B(3.0)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학부(과)별 입학정원수 대비 입학전형 및 모집별 해당학과 우수학생 중 가계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

나. 신입생 수능성적우수장학금 : 수시2학기 간호과 지원자 및 정시모집 지원자에 한하여 1~3등급 자에게 차등 지급

다. 재학생 성적장학금 : 직전(前) 학기 성적에 의하여 선정되며 학과별 재학생 수에 따라 인원이 배정됨. 단, 조기복학생은 성적장학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봉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직전(前)학기 학업성적

이 평점평균 B(3.0)이상인 자. 단, 학생간부로서 장학금 미지급 사유 발생시 또는 간부직 사직 또는 탈퇴 시 장학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5. 근로장학금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자로서 학부(과)장 및 담당교수 추천에 의하여 교학처(학생팀)에서 선발하며 교내·외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

6.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수혜기간은 2년제는 4학기(2년), 3년제는 6학기(3년), 4년제 8학기(4년) 직전학기 성적이 관련 기관의 법규(70점/100점 이상)에 따른다.

제출서류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통

제출기간 : 신입생은 등록기간 중, 복학생은 복학 신청 시 제출한다.

지 급 액 : 등록금 전액 지급

7. 도친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부(과)장 및 담당교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6.23.>

8. 다솜장학금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한자에 한하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단, 2인 중 1인이라도 산업체위탁생일 경우는 제외함.

9. 대경장학금

학교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10. 교직원장학금

본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직계비속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11. 저소득층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에게 지급하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12. 면학장학금

본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유급생 포함)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교원 추천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3.>

13. 장애우장학금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하고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

14. 연계교육과정장학금

본 대학과 연계된 고교출신자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단, 당해 연도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15. 캠프, 본교대회수상자장학금

본 대학 하계캠프 및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6. 특기자장학금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기능경기 도 단위 입상자, 체육개인기능 우수자, 체육관련 대외적 학교명예를 빛낸 자로서 학부(과)장 추천자, 예능방면, 교내외 각종 경기대회 우수상이상 입상자 중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17. 산업체면학장학금

본 대학 신입생 중 산업체 6개월 이상 재직 및 경력 근무자 중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18. 만학도장학금

입학일 기준 25세 이상의 신입생 <개정 2013.7.1.>

19. 성인재직자장학금

입학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의 신입생.(정원외 “성인재직자 전형” 지원/합격 시에만 수혜가능) <개정 2013.7.1.>

20. 전문대졸자장학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정원 외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 지원/합격 시에만 수혜가능)

21. 산업체위탁장학금

본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는 산업체위탁생(직장인학위과정)에게 장학금 지급

22. 자격증소지자장학금

본 대학 모집단위별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지급. 단, 각 차수별 원서접수 마감일 내에 제출된 자격증만 장학으로 인정

23. 특별장학금

본 대학 장학위원회에서 특별장학생을 선정한 경우 장학금 지급

24. 북한동포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에 의거 교육지원대상인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설 2016.12.23.>

② 외부장학금

1. 종류 : 외부장학금으로 대구은행장학금, 보훈장학금, 군장학금, 국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영풍문화재단 장학금 등 기타 다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배정 : 외부장학금은 교학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선정과 지급을 관장하며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14.3.1.>

- 1) 외부장학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학과, 수혜자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2) 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학처장, 기획조정실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의 협의를 거쳐 배정을 확정한다.<개정 2016.6.23., 2016.7.28.>
3. 추천 : 장학생 후보자는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추천한다.
4. 지급방법 : 외부 장학금이 학교를 경유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총무처에 입금조치 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기타 : 위의 사항이외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지급통지서에 의거하여 해당 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장학금 신청 및 포기서류) 교내에서 지급하는 성적관련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과 지급되는 모든 교내외 장학금을 포기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처(학생팀)에서 소정의 장학금 신청 및 포기서류를 발급 받아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

제6조(장학금 지급 제한) 1. 성적장학생은 직전(前)학기 성적이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B(3.0) 이상 이어야 한다.

단, 학과 전체 신청학점이 18학점이하일 경우 평균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B(3.0) 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 봉사장학생은 직전(前)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B(3.0)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장학금은 학칙 및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7조(보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8년도(98학번)까지의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범위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3조 (종류 및 지급기준) ②항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